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주요 개정사항

<'22.4.25.(월). 중수본 취약시설지원팀>

1 검토 배경

- 포스트 오미크론 및 거리두기 해제(4.18)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외출·외박, 취식 등 세부 생활수칙 완화 필요
 -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**는 중단 중('22.3.1.~), 다만, 노인시설 등*은 개별지침으로 강화된 방역 시행 중
 - ※ 노인여가복지시설, 노인요양시설, 정신시설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 중,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, 외출·외박 제한, 입소자·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등

2 주요 변경사항

- 노인·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**일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** 등의 외출·외박, 프로그램 실시 및 취식 제한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
 -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·종사자 선제검사,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, 외출·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별도 지침으로 지속

<사회복지시설 출입 등 세부규정 변경사항>

구분	현행(10판)	개선(11판)
시설 출입	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 중심으로 허용	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시 제한 없음
외출·외박	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 중심으로 허용 -미접종자도 등교, 출근, 그 외 시설장 허가 하 허용	원칙적 허용 -복귀 후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
프로그램	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 중심으로 허용	시설장 판단하에
취식	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 중심으로 예외적 허용	원칙적 허용

- 마스크 착용, 환기와 소독, 유증상시 검사 등 자율방역은 지속
 - ※ 취약시설로서 KF80, KF94 등 마스크 착용 권고

【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(권고) 】 *생활방역 세부수칙(질병청, 4.25.(월) 개정)

- 1 “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”
- 2 “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,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”
- 3 “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”
- 4 “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”
- 5 “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”
- 6 “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”

- 개별 공문으로 시행했던 방역수칙 등 간소화
 - 방역패스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증명방법 세부사항 삭제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연속성 계획(BCP) 등 삭제
- 적용 기간 : '22. 4월 25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 - ※ 시설 특성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시설 소관부서 및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

3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

-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정(안) 마련(4.21.)
- 사회복지시설 소관부서 의견 수렴(4.21~22) 후 지침 시행(4.25)
 - 감염병 등급조정(제1급→제2급)에 따른 격리기준, 마스크 지침 등 주요 조치 변경시 추가개정 검토